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79
----------	------

제출연월일: 2020. 8.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1. 제안이유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통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지원 근거 및 대상 (안 제3조)

1) 가스타이머 콕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

2)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환자

다. 가스타이머 콕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범위 (안 제4조 ~ 제5조)

1) 설치비용 100분의 80까지 지원: 70세 이상 주민

2) 설치비용 전액 지원: 치매환자, 70세 이상 주민 중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라. 가스타이머 콕 보조금 신청방법 및 감독 등 (안 제6조 ~ 제8조)

1)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 작성·제출로 보조금 신청

2)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보조금 환수조치 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7. 9. ~ 7.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성동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2. 70세 이상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 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

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하였을 때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제4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지원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택구분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다세대가구 등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보조금전액 지원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치매환자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성동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보조금전액지원대상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6조 관련)

신청인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사업기간	20 . . . ~ 20 . . . .			
설치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도시가스 : 세대 LPG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총 공사비용	원	신청금액	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설치세대별 설치전후 사진 1부. 2. 설치세대별 설치확인서 1부.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환자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장치 설치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급 지원기간을 5년 이상의 장기사업으로 예상하고, 가스 안전장치 및 설치비용을 지원대상별 80~100% 보조금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이후	합계
세출	치매환자 중 자택거주자	12,705	5,445	-	-	-	18,150
	70세 이상 주민 (전액 지원대상 포함)	9,772	17,032	22,477	22,477	1,033,960	1,105,720
	소계(b)	22,477	22,477	22,477	22,477	1,033,960	<b>1,123,870</b>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이후	합계
국	비						
시	비						
구	비	22,477	22,477	22,477	22,477	1,033,960	1,123,870
민	간						
기	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b>합 계</b>		22,477	22,477	22,477	22,477	1,033,960	1,123,870

5. 덧붙이는 의견 : 보급 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조정코자함.

6. 작성자 : 맑은환경과 지방공업주사보 최지하(02-2286-6371)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용

1. 총 예상보조금 : 1,123백만원
2. 지원대상 : 70세 이상 주민 및 치매환자
3. 지원대상별 산출내역 ('19.12월 기준)

대상별 인원		소요예산	
대상	인원(명)	산출내용	산출금액(원)
<b>합 계</b>		<b>1,123,870,000</b>	
치매환자 중 자택거주자 (치매환자 2,649명)		330명*55,000원*100%	<b>18,150,000</b>
70세 이상 주민	합 계	-	<b>1,105,720,000</b>
	일 반	16,465명*55,000원*80%	724,460,000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6,932명*55,000원*100%	381,260,000

## < 관 계 법 규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